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3.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3. 20.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영등포구의 균형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부터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 : 소관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 관리자, 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임 기 : 2년
- 회의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회의개최
- 심의내용
 -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정비 촉진 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 관리자, 구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리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비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3. 31.

보 고 자 : 이 남 식